

[수정안포함]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천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로 하고 '별표'중

1.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중 감사담당관실란 다음에 총무과란 및 시정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민방위과의 사무를 총무과 사무로 하며, '별표'중 '2. 동위임사항' 다음에 '3. 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적용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3.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6. 13

다. 상정일자 : 94. 6. 17

라. 의결일자 : 94. 6. 1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나. 제안사유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94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기존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본 조례제정으로 통합 운영함.

다.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세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수입
 -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 특별회계의 세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용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한 세수는?	○ 약 3억2천만원 정도임
○ 교통유발부담금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 는지?	○ 산출방법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며 부친시의 경우 m당 약350원 정도 계산 하면 적합하다고 봄.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교통문제는 세계 어느나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 병원이나 백화점같이 주차면적을 많이 요하는 장소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함이 타당.

5. 수정안 내용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한 조세저항 우려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9.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80
의 결 년 월 일	94. 6. 27. (제29회)

제출년월일 : 1994. 6.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 1992. 12. 8 (법률 제4533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 :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6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개정 : 1993. 6. 11 (교통부령 제1003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6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9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이에 따른 회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경기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지시 (경기 교기 91115-1828호, 93. 11. 12)

-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작성 : 94. 1. 28
-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법예고 : 94. 3. 21 ~ 94. 4. 9(20일간)
 - 시·구·동 게시공고 : 의견제출자 없음
-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심의 통과 : 94. 5. 31

3.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세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2조제3항에 의한 수입
 -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 특별회계의 세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비용

붙임 I.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II. 관련법령 발췌내용 1부. 끝.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에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